

# 공정거래 정책



2022년 10월 1차 개정

## 목차

공정거래 • 동반성장에 대한 책임	3
공정거래 목표 달성	3
대상(주) 공정거래 기본 원칙	4
공정거래 • 동반성장에 대한 책임수행	5

## 공정거래 · 동반성장에 대한 책임

대상(주)는 고객, 경쟁사, 판매처 및 구입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비자보호관련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등에 따라 공정한 거래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정거래·동반성장에 대한 책임은 대상(주)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나아가 협력사와 그 외의 관계자에 의한 공정거래·동반성장에의 부정적인 영향이 대상(주)의 사업, 제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 관계되어 있는 경우, 대상(주)는 이러한 협력사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동반성장에 대한 대처를 요구해 나갈 것이다.

## 공정거래 목표 달성

대상(주)는 다음과 같은 공정거래 목표를 설정하고 각 목표를 담당하는 책임부서를 통해서 목표 달성 세부 계획을 실행하고 매년ESG 기획팀, 법무팀 등 책임부서는 목표 달성 현황을 검토하고 목표를 재설정한다.

### 1. 공정거래 목표

- 1) 준법경영시스템이 인증된 사업장 비율  
- 2025년 중장기 목표 100%

## 대상(주) 공정거래 기본 원칙

대상(주)는 우리가 사회의 한 구성원이며 법령 준수가 최저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임을 이해한다. 법령 준수는 기업으로서 활동상 불가결하며 모든 기업에게 당연히 기대되는 것이다. 이 공정거래정책은 대상(주)의 기업 이념에 근거하여, 이 책임을 여기에 표현하는 것이며 대상(주)의 컴플라이언스경영시스템, 윤리 강령 및 행동 지침을 보완하는 것이다.

### 1. 고객 등과의 관계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과대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 2. 경쟁사와의 관계

자유 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 어떠한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이라고 해도 제품의 가격, 수량, 판매처 등에 관해서, 경쟁회사와 결정하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금지되어 있다. 사업상 개최되는 회합에서는 가격이나 판매 조건 및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화제로 논의해서는 아니 되며, 만일 불필요한 사항이 화제가 되었을 경우는 즉시 그 회합에서 퇴석해야 한다.

### 3. 협력회사와의 관계

제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 설비, 자재구매, 제조업체(이하 “협력회사”)와는 좋은 파트너로서 건전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금 인하 강요나 대금 지급 지연 등 불공정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협력회사 등록 및 선정은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입찰을 함에 있어서 경쟁업체의 정보를 다른 업체에 제공해서는 안된다. 담합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협력회사의 입찰을 거부할 수 있다. 협력회사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거래조건 개선, 지도가 가능토록 투명하고 공정한 내부기준과 시스템을 만들어 적용한다. 엄격한 품질관리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 협력회사에 ‘품질기준’을 제시·관리한다.

대리점 등의 판매처가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재판매 가격)을 구속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판매처에 의해 차별적인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으로 판매처를 권유하거나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판매처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공정거래·동반성장의 책임 수행

대상(주)는 협력사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sup>1</sup>을 반영하고, 동반성장협약제도 실행하여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대상(주)는 이를 위해서

- 컴플라이언스 평가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해 갈 것이다.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에는 잠재적 또는 실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영향을 식별, 분석, 평가하는 것이나 리스크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포함된다.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갈 것이다.
- 또한, 대상(주)가 공정거래·동반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키거나 이것에 관여한 것이 밝혀졌을 경우 사내외의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그 구제에 충실히 임한다.
- 대상(주)는 사업 활동을 하는 각각의 지역에서 그 나라의 국내법 및 규제를 준수한다.
- 대상(주)는 본 정책이 회사의 모든 활동에 포함되도록 그리고 본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적절한 교육 및 능력 개발을 실시해 나갈 것이다.
- 또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에 대한 잠재적 및 실제의 영향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관련된 외부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협의를 실시해 나갈 것이다.

---

<sup>1</sup> 공정거래 4대 실천 사항은 협력사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실천사항이다.

1.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2. 협력업체 선정, 운용 가이드라인
3.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
4.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별첨]

문건 요약

제정일자	2022.06		
개정내역	버전	개정 일자	주요 개정 내용
	2	2022.10	공정거래 목표 달성 추가
담당부서	법무팀		